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864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상병급여 제도 도입	3

I. 개요

1.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86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희승의원 등 15인
- (2) 제 안 일 : 2026. 3. 30.
- (3) 회 부 일 : 2026. 3. 3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범사업 형태로 상병수당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일부 지역 외에는 상병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공단으로 하여금 상병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음.

또한, 세계보건기구 및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생계 유지에 대한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병가와 상병급여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유급병가를 신청할 수 없거나 유급병가기간이 끝났음에도 추가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공단이 상병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생계 걱정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6까지 신설 등).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상병급여 제도 도입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급여로 규정하고 있는 ‘상병수당’을 ‘상병급여’라는 이름으로 변경하면서 의무급여로 전환하도록 하고,

그 지급 대상을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손실이 발생한 가입자, 피부양자의 질병·부상·노령에 따른 돌봄으로 인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손실이 발생한 가입자 그리고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본인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업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로 함.

또한, 지급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액은 기본적으로 소득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 소득의 1천분의 667로 하며,

그 밖에 「근로기준법」 상 유급병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급여와의 관계를 규율하고, 상병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6까지 신설, 제50조, 제108조의3제3항제1호 및 제5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9조의2(상병급여) ① 공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

<신 설>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자에게 상
병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업무를 하지 못하거나 업무시간이 감
소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손
실이 발생한 가입자

2.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또는 노령에
따른 돌봄으로 인하여 업무를 하지
못하거나 업무시간이 감소하여 근로
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손실이 발생한
가입자

3. 본인의 배우자 또는 친족(4촌 이내의
친족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본인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
지 못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시간이
감소하여 사업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② 국가는 상병급여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함에 있어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49조의3(상병급여의 지급 신청 및 지급
기간 등) ① 상병급여를 지급받고자 하
는 가입자는 공단에 상병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신청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병급여의 지급
여부, 지급 기간 및 지급액을 결정하여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상병급여의 지급 기간은 30일 이내
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추가
적인 치료 또는 돌봄이 필요하여 상병
급여의 지급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
는 경우 지급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신 설>

있다. 이 경우 상병급여의 총 지급 기간은 가입자 1인당 최대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공단은 상병급여의 지급 신청 접수, 상병급여의 지급 연장 신청 접수, 상병급여 지급 인정 여부의 판단 및 상병급여 지급 연장 인정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상병급여 지급 신청 및 통지, 제3항에 따른 상병급여 지급 기간의 연장 신청, 제4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4(상병급여액) ① 상병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가입자의 소득 손실이 발생하기 전전 달 말일부터 이전 12개월동안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 월별 보험료액 산정의 기준이 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를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의 1천분의 667

2. 가입자의 소득 손실이 발생하기 전전 달 말일부터 이전 6개월동안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를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의 1천분의 667

② 상병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제2호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상병급여일액을 제2호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일액

<신 설>

<신 설>

2. 가입자의 소득 손실이 최초로 발생한 날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병급여 지급 기간 동안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상병급여로 지급한다.

제49조의5(「근로기준법」과의 관계) 제4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사업장 내에서 질병, 부상, 돌봄을 이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유급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급병가가 모두 종료된 후부터 상병급여를 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의2에 따른 유급병가

2. 제1호에 따른 유급병가기간을 초과하는 별도의 약정 유급병가

제49조의6(「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① 상병급여를 신청하는 가입자는 상병급여의 신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가입자가 제1항에 따라 상병급여의 신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동시에 한 경우 가입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대신 지급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대신 지급한 이후 가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대신 지급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대신 지급한 이후 가입자가 「산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u>장제비</u>, <u>상 병수당</u>,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 다.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 ② (생략)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u>보험급여</u> 2. 3. (생략) ④ (생략) <u><신설></u>	<u>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신 지급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가입자 에게 청구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 가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 율로 가입자에게 융자한다.</u> 제50조(부가급여) ----- ----- -----<u>장제비</u>----- -----.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u>보험급여</u> (상병급여는 제외한다) 2.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는 공단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u>상병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 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u>
---	--

※ 시행일: 2027.1.1.

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2항¹⁾ 삭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① 제4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사람은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받은 사람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상병수당(傷病手當)’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근로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임²⁾.

- 현행법 제50조³⁾에는 상병수당의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임의로 실시할 수 있는 부가급여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⁴⁾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만을 부가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상병수당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⁵⁾

□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는 1952년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제102호 협약)’을 채택하여 각국에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한 이후, 1969년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협약(제130호 협약)’,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권고(제134호 권고)’를 차례로 채택하여 상병수당의 하위기준 및 상위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

-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OECD에 가입한 38개 국가 중 우리나라와 스위스, 이스라엘, 미국 일부주를 제외한 34개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⁶⁾

2) 국회입법조사처, 주요국의 상병수당제도 현황 및 시사점 검토, 2017.

3)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① 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급여는 임신·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진료비로 한다.

5)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연 60일의 범위에서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최대 2년간 봉급의 50~70%를 지급받을 수 있음. 민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병가에 관한 내용을 근로조건으로 정하는 경우 이를 지급받을 수 있음.

6) 보건사회연구원, 2023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 및 본 제도 운영방안 연구용역, 2023

< ILO 사회보장 관련 협약 등에서의 상병수당에 관한 규정 >

구분	최저기준 협약 (제102호 협약)	상병수당 협약 (제130호 협약)	상병수당 권고 (제134호 권고)
적용범위 (경제활동인구 대비)	20% 이상	75% 이상	100%
최대보장 기간	26주 이상	52주 이상	모든 기간
급여수준	이전 소득의 45% 이상	이전 소득의 60% 이상	이전 소득의 66.7% 이상

자료: 보건사회연구원

□ 우리나라에서 상병수당 도입 논의는 과거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 이후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2020년 ‘한국형 상병수당 추진단’ 등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였고, 2021년 연구용역을 통해 시범사업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2022년부터 일반회계 사업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에 6개 지역(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2024년말 종료되었고, 2단계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4개 지역(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대구 달서구), 3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 7월부터 4개 지역(강원 원주시, 전북 전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음.

- 대상자는 해당 지역 거주 또는 소재 사업장의 15~64세 취업자로, 1단계 사업의 경우 소득기준 없이 대상지역에 따라 근로활동불가모형과 의료이용일수모형으로 구분하고⁷⁾ 대기기간(3일, 7일,

7) 시범사업에서 활용한 상병수당 유형은 ① 요양방법에 관계없이 질병·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수당을 지급하는 ‘근로활동불가모형’과, ② 입원이 발생한 경우 입원 및 관련 외래진료일 수 만

14일)과 최대보장기간(120일, 150일)을 차등화하여 운영하였으나,
2단계 사업은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⁸⁾ 120% 이하)을 두고 보장
수준은 최저임금의 60%(2025년 기준 48,150원)로 하면서 모형
(근로활동불가모형), 대기기간(7일), 최대보장기간(150일)을 일원
화하여 운영하고 있고,

3단계 사업은 당초 2단계 사업과 동일한 소득기준을 두었으나
2025년 5월부터 직전 소득의 60%를 지급하는 정률제 방식을 도
입하면서 소득기준을 두지 않고 운영하고 있으며, 모형·대기기
간·최대보장기간은 2단계 사업과 동일함.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

- **(사업내용)** 취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 지급
- **(대상지역)** 8개 지역*('26년 기준) / 공모 선정
 - * 2단계 시범사업('23.7~, 4개 시군구) 및 3단계 시범사업('24.7~, 4개 시군구)
 - ※ 1단계 시범사업(6개 시군구)은 '22.7월~'24.12월 운영 후 종료
- **(대상자)** 해당 지역 거주 또는 소재 사업장의 15~64세 취업자
 - (취업자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직전 60일 중 30일
이상 자격 유지), 자영업자(3개월 사업자등록 및 매출 증빙)
 - (소득기준) 2단계 지역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3단계 지역은 소득기준 없음
- **(보장수준)** 日당 49,540원(최저임금의 60%), 최대 150일까지 지급
 - * 3단계 지역의 건보 직장가입자는 직전소득의 60% 지급(하한 49,540원 ~ 상한 68,100원)

کم 급여를 지급하는 '의료이용일수모형'으로 구분됨.

8) 참고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 기
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음.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가구: 10,474,348원)

< 지역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현황 >

구분	1단계('22.7월 ~ '24.12월)			2단계('23.7월 ~)		3단계('24.7월 ~)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기준 없음 ¹⁾
모형구분 ²⁾	근로불가	근로불가	의료이용	근로불가	근로불가 ³⁾	근로불가
대상지역	부천·포항	서울중로·천안	순천·창원	대구달서·안양	용인·익산	전주·원주·충주·홍성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7일	7일	7일
최대보장기간 ⁴⁾	120일	150일	120일	150일	150일	150일

1) 3단계 지역은 당초 2단계와 동일한 소득기준 적용하였으나 '25.5월, 정률제 시행 시 소득기준 폐지

2) 모형구분: (근로활동불가모형) 요양방법 상관없이 아파서 근로활동 어려운 기간 지급

(의료이용일수모형)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진료일수 지급

(혼합근로활동불가모형) ①입원, ②재택·외래의 각 기간에 대해 별도 기준 적용하여 지급

3) 용인·익산지역 모형 변동: 의료이용일수모형('23.7월~'24.9월) → 혼합근로활동불가모형('24.10월~'25.3월) → 근로활동불가모형('25.4월~)

4) '24.7월, 1단계·2단계 최대보장기간 확대(1단계: 90일 → 120일, 120일 → 150일 / 2단계: 90일·120일 → 150일)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당초에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추가로 2년을 연장하여 2027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재원조달방식, 적용대상, 급여수준 등을 검토하여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본 사업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⁹⁾

□ 개정안은 현행법상 부가급여로 규정되어 있는 상병수당을 상병급여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의무급여로 전환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의 이른바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업무와 관계 없는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하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

9)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실적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재원조달방식(사회보험 또는 조세), 적용대상(보편 또는 선별), 급여수준, 다른 제도와 연계 등을 검토하여 본사업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2025년에는 8개 지역 시범사업 지속 운영 및 운영결과 평가를 수행하고, 2026년에는 시범사업을 지속운영하며 본제도 도입 관련 사회적 논의 및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준비하며, 2027년에는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이후 시범사업 평가 및 사회적 논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국민건강보험법령 등) 개정을 통해 상병수당 본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상병수당 지급대상·기준, 지급방식 및 재원조달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및 모형이 제시되고 있는바,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시행을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의 결과를 참고하여 지급대상 및 구체적인 지급방식, 산업재해보상보험과의 관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동 개정안은 본인의 질병·부상 뿐만 아니라 피부양자의 질병·부상·노령에 따른 돌봄이나 본인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배우자 또는 친족(4촌 이내)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까지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고(안 제49조의2제1항), 지급기간도 최대 1년 6개월(안 제49조의3제3항)로 하고 있으며 지급액도 직전 소득의 1천분의 667로 규정하여 현행 시범사업 대비 지급대상·기간 및 지급액이 확대되나 그에 따른 재정 소요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기간 및 지급액을 결정·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안 제49조의3제1항) 의무 기록이나 근로중단확인서 등 수급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확인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15일 이내 결정이 가능할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상병급여의 지급 신청 접수, 지급 연장 신청 접수, 지급 인정여부의 판단 및 지급 연장 인정 여부의 판단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안 제49조의3제4

항), 상병수당 지급 인정여부 등의 판단에는 신청인의 소득 및 자격요건 확인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이 이를 수행할 수 있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현행 시범사업과 개정안 간 비교 >

구분	현행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정안에 따른 상병급여
지급대상	업무와 관련 없는 상병으로 근로를 못하는 15세 이상 ~ 65세 미만 취업자 (단, 시범사업 지역 거주 혹은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무자만 해당)	① 본인의 질병·부상(업무상 질병·부상 제외)으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손실이 발생한 가입자 ② 피부양자의 질병·부상·노령에 따른 돌봄으로 인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손실이 발생한 가입자 ③ 본인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배우자 또는 친족(4촌이내)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노무를 제공받지 못하여 사업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신청-지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u>60일 이내</u> 에 지급이 원칙	· 신청일로부터 <u>15일 이내</u> 에 지급 여부·기간 및 지급액 결정·통지(안 제49조의3제1항)
급여 지급기간	· 최초 신청시 4주(28일) 이내, 이후 연장신청시 8주(56일) 이내 지급 가능 · <u>최대 150일까지</u> 지급	· 1회 신청당 30일 이내(안 제49조의3제2항) · 지급기간 연장 가능, <u>최대 1년 6개월</u> (안 제49조의3제3항)
지급액	- (2단계 시범사업) 49,540원(정액) - (3단계 시범사업) 상병수당 급여일수 x 평균임금일액 x 60%(정률) ※ (하한) 49,540원, (상한) 68,100원	가입자의 소득 손실이 발생하기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12개월 또는 6개월동안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를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의 1천분의 667(12개월과 6개월 중 큰 금액)(안 제49조의4) ※ (상한액) 최저임금법 상 최저시급 x 8 x 150%
유급병가와 관계	유급병가 종료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나, 상병으로 인한 휴가·휴직기간 중 보수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기간동안 출근하거나 보수를 받은 것(유급병가 사용)이 확인되면 해당 일자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제외	유급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급병가가 모두 종료된 후부터 상병급여 지급(안 제49조의5)
산재보험 급여와 관계	· 산재보험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산재보험법 제53조, 제66조)을 수급 중인 경우 상병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 상병급여와 산재보험 요양급여 동시 신청 가능(안 제49조의6)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의 본인

구분	현행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정안에 따른 상병급여
	· 상병수당 지급 후 산재보험 휴업 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중복 확인 시 상병수당 지급액 환수 ※ 시범사업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재보험법 제40조)는 상병수당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일부부담금을 대신 지급하고, 해당 가입자가 산재보험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해당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 산재보험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을 가입자에게 청구, 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건보공단이 용자할 수 있음
업무수행주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수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위탁 가능)
재원	국고	건강보험료 (상병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국고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 재구성

- 그 밖에, 현재 개정안 외에도 상병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6건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¹⁰⁾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각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급기준·방식 등에 대하여 직전 12개월간 보수 및 소득의 66.7%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수진의원안), 10일 이상 연속 입원 시 직전 3개월간 평균 보수 및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방식(박범계의원안), 직전 3개월 평균 보수 및 소득의 66.7%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권향엽의원안),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또는 보수·소득월액의 60%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전종덕의원안), 지급기준 등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서영석의원안 및 김태년의원안)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음.

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409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41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969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020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31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2215호)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 손실에 대한 우려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에 공감함. 다만, 상병수당 관련 법률 개정은 재원조달방식, 수급요건, 보장수준, 유관 제도와의 관계 등 운영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유관부처·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운영방안을 마련한 후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

- 현행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적용 범위, 급여 수준 등이 개정안의 상병급여 및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와 상이하여, 제도 간 급여 중복 또는 공백 발생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 현행법상 부가급여로 규정되어 있는 상병수당을 의무급여로 전환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하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함.
- 다만, 상병수당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서는 재원 조달방식, 지원 대상자, 보장 수준, 유관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자 단체, 근로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함.

-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는 상병수당의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임의로 실시할 수 있는 부가급여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만을 부가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상병수당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현행 위임규정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와 같이 상병수당의 대상, 범위 및 지급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시행을 위하여 현재 실시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2022~2027년) 운영결과 및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효과성 평가 및 전문가 자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세부 운영방안 마련 후 법령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대한의사협회

- 정부가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상병수당에 소요되는 재정은 정액제의 경우 약 3조 5,999억 원, 정률제의 경우 최대 4조 2,60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고 있음. 이는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요구되는 수준으로, 이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재원

마련 방안 없이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여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가속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큼.

- 한편, 건강보험 재정은 주로 환자의 질병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양급여비용에 사용되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장 항목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의학적 타당성, 치료 효과성,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의 사용 목적과 원칙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음.
- 반면, 상병수당은 현행법상 부가급여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입자의 근로 및 사업 ‘소득 보전’의 성격을 가지며 건강보험 고유의 기능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제도적 정합성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 측면에서 별도의 사회보장 체계로 독립시켜 운영·관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방향임.
- 아울러, 현재 상병수당은 2024년 7월부터 3단계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특히 제도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재정 소요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시범사업 종료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충분히 제도의 효과성과 재정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재원조달 방안, 의료자원 배분 문제, 사회적 수용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와 합의를 거친 이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현 시점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충분한 여건이 갖춰
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동 개정안에 반대하는 바임.

문 의 처
02)6788-5503